



## 사례로 알아보는 수출입과 관세 (5)

# 꼭 알아둬야 할 관세 절세

수입하면 “관세”를 내야 한다. 대부분 사람들은 관세를 한 푼이라도 적게 내고 싶어한다. 따라서, 수입하는 때 하는 가장 많은 질문은 “어떻게 절세(?)하는 방법이 없겠나?” 는 것이다. 방법은 다양하게 있지만, 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지는 거래관계나, 수출입 물품의 종류, 용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입자의 노력과 관심에 달려있다. 이번 회에서는 이 방법 중에서 관세환급과 관세환급 성공사례를 다뤄보도록 하자.

관세환급제도 중에서 가장 큰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제도이다. 이 제도는 수출 업체의 원재료 수입에 따른 관세부담을 줄여 수출업체가 가격경쟁력을 갖게 하자는 취지에서 1975년 처음 시행되었다.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제도는 다시 두 가지로 나뉘어 진다. 수출금액 10,000원 당 일정금액을 환급해주는 “간이정액환급제도”와 기업체가 원재료의 소요량을 계산해서 수출물품 당 원재료의 소요량에 따라 수입하는 때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는 “개별환급제도”가 그것이다. 개별환급제도는 소요량을 계산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환급 담당자를 따로 두기 어려운 중소기업에서는 보통 간이정액환급을 선호한다.

간이정액환급제도(이하 간이환급)는 복잡한 소요량 계산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체를 위하여 환급 절차를 간소히 하여 특별히 만들어진 제도이다. 간이환급은 관세청에서 고시하는 금액에 따라 환급이 되기 때문에, 수출신고필증 정도의 간단한 서류로 환급이 가능하고 국내산 원재료를 사용하였다도 환급이 가능하여 국내산 원재료를 많이 사용할수록 환급에 의한 혜택이 많아지는 장점(관세를 내지 않고도 환급이 되므로)이 있다. 그러나 납부한 관세액에 환급액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고, 때에 따라서는 간이정액 환급을 사용한 경우 개별환급 보다 현저히 환급액이 작아지는 경우도 있다.

I사는 중소기업으로 차량용 전구를 제조하여 수출하고 있다. 전구제조에는 20여 개의 원재료가 사용이 되는데, 이들 각각에 대해서 소요량을 계산하기 어려워 간이환급제도를 이용해서 매년 1,500만 원 정도를 환급받고 있었다.

문제는 환급이 아닌 품목분류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I사가 수입하는 원재료 중에는 “하이브리드IC”라는 물품이 있었는데 8541호로 품목분류하여 “0%”의 세율을 적용받아 수입하고 있었다. 그런데, 세관에서 이 물품의 품목분류가 잘못되었으니 트랜지스터(8504호, 관세율 8%)로 품목분류하라는 판정과 함께 3,000여 만원의 추징을 선고한 것이다. I사가 연락을 해온 것은 이 시점이였다. 3,000만 원은 중소기업 입장에서 적은 돈이 아니었다. 묘안이 필요했다.

I사는 세관의 판정에 대해서 수궁하고 있었고 불복을 제기해도 승률이 적을 것으로 보였다. 따라서 불복이 아닌 방법을 통해 I사가 부담하는 관세액을 줄이는 것에 초점을 두기로 했다. 다양한 관점에서 I사의 거래와 수출입 물품을 살핀 후, 환급 제도를 역으로 이용해 보기로 했다.

일단 I사에게 추징금 3,000여 만원을 납부하도록 했다. 영세율을 적용 받았던 수입원재료는 이제 수정신고에 따라 8%의 관세를 납부한 것이 된다. 그리고 그간 간이정액환급을 통해 이미 환급을 받았던 수출 신고 건에 대해서 “과다환급자진신고”를 통해 환급금과 환급가산금까지 합하여 총 1,800여 만원을 다시 납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제 지난 수출신고필증들은 다시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 서류가 되었다. 또 “간이환급 비적용 승인” 신청을 하여 환급방법을 개별환급제도로 변경하도록 했다.

이 모든 절차를 수행한 이유는 관세추징금 보다 더 많은 환급금을 발생시키면 추징에 의한 비용을 줄이거나 나아가 추징금 보다 더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개별환급제도는 간이환급과 달리 환급액을 보다 정확히 산출할 수 있다. 따라서 추징된 8%의 관세를 보다 정확히 환급 받고 다른 간이환급제도 내에서 적용되지 않았던 환급 가능한 원재료들을 찾아 환급 받는다면 추징에 의한 기업의 손실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개별환급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출물품에 사용된 수입원재료의 소요량을 소요량계산서를 통해 증명하여야 한다. 관세 환급은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 수입 시에 납부한 관세를 수출할 때 돌려주는 것이다. 이 때 소요량을 계산하는 목적은 수출품 생산에 사용된 수입 원재료 양을 따져서 그 양에 해당하는 관세만큼만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소요량이란 수출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직접 투입되어 소비되는 원재료의 양. 수출품을 구성하고 있는 실제 양인 단위실량과 수출품 제조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모량을 더해

서 정한다. 소요량 계산 방법은 수출물품의 특성, 제조방법, 손모양의 안정여부, 생산기간 등을 고려하여 6가지 방법(단위실량, 단위설계 소요량, 수출건별등 총소요량,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 1회계년도 단위소요량, 위탁건별 총소요량 산정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업체에 맞는 소요량 계산방법을 선정하고 자재관리부서, 생산부서, 제품 및 부산물창고에 연락하여 증빙서류를 갖췄다.

처음에는 추징 당한 하이브리드 IC에 집중하였으나, 증빙서류를 갖추는 과정에서 직접 수입하지는 않았으나, 다른 업체가 수입한 원재료도 제조에 사용되고 있음을 발견했고 이 관세도 환급 받기 위해 국내거래 증빙자료들을 찾아보기로 했다. 국내 공급증명 서류에는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분할증명서 그리고 평균세액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I사의 국내 공급업체에 연락하여 분할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 한 모두 받도록 했다. 공급업체들의 협력을 잘 받아 10여 개 원재료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분할증명서 등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I사는 5,000여 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었다. 정리하자면 I사는 추징 받은 3,000만 원보다 2,000여 만원을 더 환급 받은 것이고 다시 납부한 과다 환급금 보다도 3,200만 원을 더 환급 받은 것이다.

관세의 추징은 기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무역거래를 하게 하기 위한 법적 조치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에 따라 부도가 나는 기업도 있고 폐업을 하는 기업도 생긴다. 추징액이 크지 않더라도 기업의 사기 저하라는 측면에서 추징은 치명적이다. I사는 추징에 굴하지 않고 “절세”라는 궁극적 목표에 충실하게 움직였으며 적법하게 이를 이루어 냈다. 대기업은 탄탄한 인력구조를 갖추고 값비싼 외부용역을 사용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이런 여력이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낸 중소기업 I사의 노력과 승리가 더욱 빛난다.